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와이어바알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리)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은 가입 형태에 따라 개인회원과 사업자회원으로 구분되며 상호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6. '제휴사'란 회사가 회원에게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제 3자를 의미합니다.
7. '아이디(ID)'란 회원이 이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사항에 동의한 후 회사가 회원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이 입력한 이메일 정보를 의미합니다.
8. '운영자'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9. '서비스중지'란 회사가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1. '거래지시'란 회원이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오류'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3. '전자지급거래'란 지급인이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통칭합니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 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15. '충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이 등록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개별 서비스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 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개별 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 ④ 회사는 제 3 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 ⑤ 회원이 제 4 항의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3. 상기 각 호에 부수하거나 연계된 업무
- ②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거래계약의 체결)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와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②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사용 등 회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회원 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부정한 용도 또는 별개의 영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만 18세 미만의 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제 6 조 (이용시간)

- ①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시간은 와이어바알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 영업일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 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7 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 8 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 내 회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 1 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 1 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 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4. 전자금융거래일시
 -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7.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④ 제 1 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 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회원의 오류정정 유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⑤ 회원이 제 1 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하이츠빌딩 609호

- 사이트 주소 : kr.biz.wirebarley.com / www.wirebarley.com

- 전화번호 : 1666 - 1073

제 9 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 10 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 8 조 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릅니다.

제 11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 1666 - 1073

이메일: kr@biz.wirebarley.com

②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3 조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 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정정보 도용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위탁을 받은 회사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

제 14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앱의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여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면, 회사는 소정의 해지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과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이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로 가입 또는 결제를 신청한 경우
3. 회사의 서비스를 부정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
4. 신종 금융사기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6. 관계 법령 및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약관을 위반한 경우
- 7. 관계 법령이나 회사의 약관과 운영정책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③ 회원은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재개합니다.
- ④ 회사는 본 조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회원의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 15 조 (전자지급 결제대행서비스)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결제수단의 정보를 송,수신 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급결제수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으로 구분됩니다.
- ② 회사는 회사 또는 결제업체(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카드사 등)의 정책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 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 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 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회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가 있는 경우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 회원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iii) 출금동의의 경우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 ③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제 18 조 (정의)

- ① 회원은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무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하는 형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는 경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에 따라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사용은 가능하지만,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은 회사, 회사의 가맹점,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이 약관, 운영정책,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특정 가맹점 또는 물품 등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잔액범위 내에서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 해당 금액만큼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차감됩니다.
- ⑤ 회원은 사전에 등록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거나 자동충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자동충전의 최소 기준금액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회원이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환급에 필요한 비용을 회원에게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을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사용한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 ⑦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회원의 환급 요청 금액보다 적은 경우 또는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환급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의 환급요청에 대하여 환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⑧ 현금 환급은 회원으로부터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7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다만,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는 환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영정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소멸시효보다 짧게 정한 경우, 이용자는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기간 경과 전까지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잔액의 90%를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 19 조 (거래의 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가입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6. 다른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 1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 ①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총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5 년이며,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 ② 무상으로 지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해당 프로모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는 해당 프로모션 등에 관한 서비스 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 합니다.
- ③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자동소멸 전 소멸예정일에 대한 안내를 소멸기한 만료 30 일전을 포함하여 3회이상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소멸예정안내는 유효기한의 도래, 연장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④ 본 서비스를 탈퇴하는 등 약관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된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제 21 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 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www.wirebarley.com)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 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22 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 ①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간편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본 조 제4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금융사기 등 피해 신고에 대한 조치

제 23 조 (사고/장애시의 처리)

- ① 회원은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유출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와이어바알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신고는 회사(와이어바알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 ③ 제 1 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회사(와이어바알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와이어바알리)는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회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와이어바알리)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 (피해의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회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구제의 처리는 특별법과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 25 조 (회사의 조치)

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인지하는 경우, 회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회원의 계정에 대하여 정지,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및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정보(가해자로 지목된 회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면책사항)

- ①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서비스 등록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회원의 관리소홀로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장 기타

제 27 조 (약관 외 준칙)

-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8 조 (준거법 및 이의제기)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와이어바알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11월 8일부터 적용합니다.